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 의무〉
〈방청인 퇴장 신청권 등에 대한 법원의 고지 의무〉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61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병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가.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 의무	2
나. 방청인 퇴정 신청권 등에 대한 법원의 고지 의무	8
다. 부칙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4. 28.
3. 회 부 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 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 의무

현행	개정안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 ⑥ (생략) <u><신 설></u> <u><신 설></u> <u>⑦ · ⑧</u>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u>조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u> <u>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u> <u>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u> <u>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u> <u>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u>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u> <u>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에게</u> <u>제5항에 따라 인적 사항의 전</u> <u>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u> <u>니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u> <u>한다.</u> <u>⑨ · 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u> <u>과 같음)</u>

○ 현행법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1), 수사기관이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 1)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체포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제1항²⁾),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음(제7조제6항³⁾). 또한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제5항⁴⁾).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가명조서 제도’라 부름⁵⁾.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가명조서 제도 고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신고자등이 해당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범죄의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어 범죄의 수사와 진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⁶⁾, 특히 조직범죄·마약범죄·뇌물범죄·경제범죄·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cvs/2708/subview.do>, 25. 11. 25.

가명조서 제도 :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를 한 사람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

금융범죄·탈세범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범죄신고자등의 안전과 신원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보호를 넘어, 국가의 형벌권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범죄신고자등은 대체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진술 시점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⁷⁾, 성폭력범죄 등 보복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⁸⁾, 현행법은 제7조에 ‘가명조서 제도’의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범죄신고자등에게 해당 제도를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수사기관의 고지 관련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대검찰청 예규⁹⁾’에는

6) 김성돈, 『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방안 연구』, 치안논총 제20집, 2004, 5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단서로서 고소 및 고발을 포함한 범죄신고는 전체 수사의 단서 중에 50%를 상회한다.”

7) 강석구·권창국,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52쪽.

“특신법상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제는 법학자나 실무가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일반인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 연합뉴스, “서울 경찰, 성폭력 사건 접수 쇠다... 피해자 가명조서 사용 저조”, 2021.10.19.

9)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3조(가명조서등 작성대상)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가명조서등의 작성 신청) ① 검사는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범죄신고자등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권’ 고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청·해양경찰청 훈령 등에는 동 고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¹⁰⁾이 없어 제도 운영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발적 범죄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 따른 범죄신고자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제도 외에도 보좌인 지정(제6조), 신변안전조치(제13조), 구조금 지급(제14조) 등이 있음에도¹¹⁾, 개정안은 인적 사항

10)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76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등에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1)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기재 생략 제도에 대해서만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 신고자등이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신청권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된 보호조치·구조금 지급 등 일체의 권리 안내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¹²⁾,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안, 의안번호 제2110032호)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모든 신청권에 대한 일괄 안내조항 신설을 규정한 바 있음.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개정안」 (조응천의원안, 제2110032호)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좌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신청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주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개정안은 고지 의무의 도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지의 시점·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의 마련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방청인 퇴정 신청권 등에 대한 법원의 고지 의무

현행	개정안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 ⑥ (생략)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현행법 제11조제5항¹³⁾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고인 또는 방청인의 퇴정, 또는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청인 퇴정 및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증인신문 신청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원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13)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증인 지위에 있는 범죄신고자등이 자신의 보호조치 신청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에 나서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며, 범죄신고자등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증언의 신빙성과 공정한 재판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7조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고지 의무 도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고지의 시점·방식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지의 형식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의 마련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부칙(적용례)

-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안 부칙 제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7항·제8항 및 제11조제7항에서 신설된 고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범죄신고자등이 특정범죄에 관하여 범죄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¹⁴⁾
- 안 부칙 제2조는 고지 의무의 적용 시점을 범죄신고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신고자 보호와 권리 행사의 실효성 확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법 시행 이후 조서·진술서 작성 또는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고지 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75

14)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7항·제8항 및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신고자등이 특정 범죄에 관하여 범죄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